

한국 · 중국 · 일본의 장애인복지법 비교를 통한 중국의 장애인 복지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n China by Comparing the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n Korea, China and Japan

왕 비 비*
Wang, Feifei

신 병 옥**
Shin, Byeonguk

이 옹 구***
Lee, Woonggu

Abstrac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n important part of society. The world has a huge population of disabled peop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welfare law. To carry forward the humanitarian spirit and develop the cause of the disabled is a sign of social civilization.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is conducive to social progress. Disabled people have the same right to pursue a happy life as non-disabled people. Now,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ll have disability welfare laws. But the content of welfare law is not the same. China's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s also very detailed, bu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education, medical care and so on.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erfect disabled persons' system in other countries,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disabled persons' welfare law in the future. By comparing the welfare laws of the three countries,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make progres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ause of the disabled.

주요어 : 한국, 중국, 일본, 장애인복지법, 비교, 발전 및 개선.

Keywords : South Korea, China, Japan,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Comparison, Development and Improve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들 장애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일이다. 이는 장애인문제가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국가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 국가의 사회문화 정도와 복지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평가척도이기도 하다.¹⁾

현재 전 세계의 장애인 인구는 10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아시아에는 6억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의 장애인수가 250만 명이고 중국의 경우 장애인은 8,500만 명이며 일본의 장애인수는 86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전체 인구 41억 명 중 14.6%로서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²⁾

한국의 각 시도별 인구수 대비 장애인 인구수 비율을 보면, 전라남도(7.55%), 전라북도(7.17%) 지방 도시가 장애인 인구비율이 더 높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고 2018년 장애인 인구통계는 보

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등록장애인 통계지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의 고

Table 1. The ratio of the disabled to the population of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대상지	시도별 총 인구수 (명)	등록 장애인수	순위	장애인구 비율	순위
서울특별시	9,765,623	392,920	2	4.02%	16
부산광역시	3,441,453	173,820	5	5.05%	9
대구광역시	2,461,769	123,070	10	5.00%	10
인천광역시	2,954,642	141,771	7	4.80%	12
광주광역시	1,459,336	69,884	14	4.79%	13
대전광역시	1,489,936	72,927	13	4.89%	11
울산광역시	1,155,623	50,640	15	4.38%	14
세종특별자치시	314,126	11,404	17	3.63%	17
경기도	13,077,153	547,386	1	4.19%	15
강원도	1,543,052	100,693	11	6.53%	4
충청북도	1,599,252	97,086	12	6.07%	6
충청남도	2,126,282	131,910	8	6.20%	5
전라북도	1,836,832	131,746	9	7.17%	2
전라남도	1,882,970	142,213	6	7.55%	1
경상북도	2,676,831	176,550	4	6.60%	3
경상남도	3,373,988	186,016	3	5.51%	7
제주특별자치도	667,191	35,840	16	5.37%	8

출처 : 통계청(2018년)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 공학박사

***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Incheon Jaeneung University, mylee5277@naver.com)

1) 오현풍,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복지법 비교연구, 2014, p.1.
2) World Health Survey, 세계보건기구(WHO), 2010, p.1.

량화가 급격히 변화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지방 중소 도시 농어촌을 포함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시설과 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학술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 된다.

일본의 선구적인 연구 및 사례에서도 동경도의 대도시보다 시즈오카현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를 선구적으로 만들었고, 지방의 벳부라는 도시는 일본 전국에서도 장애인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도화를 시킨 모범적인 지방 중소도시이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대도시보다 지방의 농어촌을 포함한 중소도시의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및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선구적으로 대비한 일본의 제도 및 법령 고찰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정책을 이들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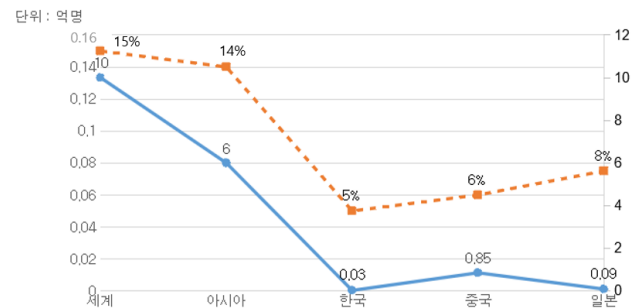


Fig. 1. Analysis of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the disabled population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는 모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복지법은 중국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며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³⁾ 이 두 나라보다 늦게 제정된 중국의 장애인법 역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나라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로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의 주요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장애인 복지법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상호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중국 장애인 복지향상과 사회적 권리보장을 하는데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있다. 연구는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법률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종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 중국, 일본의 장애인 관련 법령을 국가 통계국의 법률 웹사이트를 조사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법률과 관련된 단행본,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 논문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 내용을 분석·종합하고, 중국의 장애인 복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아시아 3국의 장애인 관련 법령

2.1 중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국의 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은 1980년에 처음 제정되어 현재 3차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Table 2. China's laws for the disabled.

중국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년도	내용
장애인 교육조례	1994	의무교육, 직업교육, 학전교육 등에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장애인 취업조례	2007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취업 지원, 취업능력 강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2008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사회참여 증진.

형사소송법, 형법, 입양법, 고등 교육법에서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가 일부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장애인 교육조례, 장애인 취업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은 장애인을 위한 법률로 장애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그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은 중국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법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중국 장애인복지법은 총 9장 6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총칙(1장), 건강의 회복(2장), 교육(3장), 노동취업(4장), 문화생활(5장), 사회보장(6장), 무장애 환경(7장), 법률책임(8장), 부차(9장)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1장에서 장애인의 정의 및 분류를 규정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모욕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군인이 공무로 부상 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장과 대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의 부양인은 반드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에 관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회사와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포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을 '전국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제2장은 장애인의 건강 회복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정부 관련 기관이 장애인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 능력을 증강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장애인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기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장애의 회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권장하고 있다.

제3장은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는 장애인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교육기관을 합법화하고 있다.

제4장은 장애인의 노동 및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3) 金炳彻, 张金峰, 韩国残疾人福利的历史现状与未来展望, 人口与发展 2013年第19卷第2期, 2013, pp.90-91.

4) 朱思慧, 曹晋儒, 姚宏勃, 日本残疾人福利制度特点及对中国之借鉴, 改革开放期刊, 2016, p.39.

장애인 복지기업, 시각장애인 안마기구와 기타 복지기관을 설립하여 장애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구가 많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장애인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음성 도서, 텔레비전 수화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문화, 체육, 공공활동 장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6장은 장애인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 기관은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비행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7장은 무장애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장애인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장애 환경의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에서 도로,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의 설치 시에 무장애시설을 건축하도록 표준화된 규

정을 두고 있다.

제8장은 법률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은 2008년 4월 다시 제정되었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2 한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한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장애인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는데 전문 9장, 9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총칙(1장), 기본정책의 강구(2장), 복지 조치(3장), 자립생활의 지원(4장), 복지시설과 단체(5장), 장애인보조기구(6장),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7장), 부칙(8장), 별칙(9장)으로 되어 있다.

Table 3. Korea's laws for the disabled.

한국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 년도	주요내용
장애인 복지법	198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5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able 4. Japan's laws for the disabled.

일본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 년도	주요내용
정신박약자 복지법	1906	정신박약자의 재활을 지원하고 필요한 보호를 진행하고 정신박약자 권리를 보호하다.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신체장애자 복지법	1949	신체장애자의 자립과 사회 경제 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신체장애자의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1960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에 따른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적 의무로 강화하는 동시에 신체장애인 범위의 개정 및 고용납부금제도의 기능을 추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강화한다.
장애인 교육법	1960	장애인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장애인 기본법	1970	장애인의 복지, 장애의 예방, 장애인 정책의 추진 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
정신건강 복지법	1995	정신장애자 치료 및 보호, 정신장애자 사회참여 촉진, 정신장애 예방,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인다.

주요 내용은 1장 총칙에서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지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부 규정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민의 책임, 장애인 날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장 기본정책의 강구에서는 장애 발생의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교육,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사회적 인식개선, 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 가족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장 복지 조치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등록,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등의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4장 자립생활의 지원에서는 자립생활지원,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 동료 간의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장 복지시설과 단체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응급조치의무, 장애인의 금지행위,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6장 장애인보조기구에는 장애인보조기구, 의지·보조기제조업의 폐쇄 및 개설사실의 통보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7장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국가시험의 실시, 응시자격 제한, 보수교육, 자격정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8장 부칙에서는 비용 부담 및 수납, 비용 보조, 압류 금지,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장 벌칙에는 양벌규정, 과태료 등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 및 제도도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고려한 주택 관련 사항들이 별도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 13조) 라고 명시되어있다. 1985년 건축법에서는 1985년 신설된 시행령에 지체장애인을 고려한 관람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986년 제정된 시행령에 승강기, 화장실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고 1988년에 건축법 시행규칙에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제시되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신

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편의시설문제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편의시설 개선효과는 없었다.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동약자를 위한 법률로 기본정신을 반파별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하여 규정되었고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동약자들이 스스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19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다. 1908년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경우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인증기관은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를 교부하며 신규도시 (Barrier-Free) 건축물 여객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Table 5. Changes in Universal Design Laws and Institutions.

년도	관련법규	의의 및 내용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을 고려한 주택관련 사항들이 별도로 다루어지기 시작함.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심신장애자 복지법 제 13조)
1985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5년 신설된 시행령에 지체장애인을 고려한 관람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1986년 제정된 시행령에 승강기 화장실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 1988년에 건축법 시행규칙에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제시됨.
1989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 1990년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편의시설문제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됨. 실제적인 편의시설 개선효과는 없었음.
199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약자를 위한 법률로 기본정신을 반파별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하여 규정됨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동약자들이 스스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20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2008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경우를 인증하는 제도 인증기관은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를 교부하며 신규도시(Barrier-Free) 건축물 여객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됨.

Table 6. The Process of Changing the Act on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법령	시행년도	내용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13조	1981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심신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
건축법시행령 61조 제2항	1985	5500여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 지체 장애자를 위해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을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동법 제53조 제2항	1986	공공시설의 승강기 및 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규정
건축법시행령 제25조	1988	승강기의 구조규정
장애인 복지법 제 33조	1989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을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으로 설치토록 권고
보건 복지부령	199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8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2006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2007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약자들이 접근하고 이동하는데 불편없는 거리나 시설물 인증
장애인차별 금지법	2007	장애인의 권리 보장

2.3 일본의 장애인 관련 법률

일본 장애인 관련 중요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일본도 한국이나 중국처럼 장애인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률이 <장애인 기본법>이다.⁵⁾ 일본의 <장애인 기본법>은 5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1장), 장애인의 복지(2장), 장애의 예방(3장), 지방의 장애인 정책의 추진(4장), 부칙(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이 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이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해서 제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장애인의 정의, 권익의 보호, 국민의 의식 강화, 국민의 의무 및 책임, 장애인 주의 설립, 장애인 정책 실시 상황에 보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장 장애인의 복지에서는 의료 및 구호, 연금, 교육(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의 교류 및 소통), 취업 컨설턴트, 취직의 촉진, 주택보장, 공공시설 및 정보이용의 무장애화, 경제적 부담감면, 문화시설의 설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

3장 장애의 예방에는 장애의 원인, 장애의 발견 및 조기치료 등의 내용이다.

4장 지방 장애인 정책의 추진에는 정부 및 지방 단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감독의 내용이다.

5) 韩君瑜, 日本残疾人福利法的特征及启示, 学术交流2010年 第11期期刊, 2010, p.81.

5장 부칙에서는 <장애인 기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3. 한·중·일 장애인 복지법의 분석 및 종합

3.1 한·중·일 장애인 복지법의 비교분석

아시아의 대표적인 3나라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장애인복지법은 국가마다 각각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총칙(목표)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즉,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장애인 복지법의 총칙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사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평등하고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물질문화 성과를 장애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

일본 장애인 복지법의 총칙(목표)은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해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의 복지를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3국의 장애인복지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삶과 더불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도 소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약간의 차이도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한 반면 중국의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권리를 보장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의 국가시스템으로 인하여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장애인복지법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자 한 내용이 보인다. 특히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의 교류 및 소통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과의 평등의식을 배양하고 ‘장애인은 보통 사람과 같으며 차별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설계획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일반인과 차이 없이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이들 세 나라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⁶⁾와 한국, 중국, 일본의 장애인 복지법을 확인한 결

과 <Table 7>와 같이 한·중·일의 장애인 복지법의 5가지 주요 차이점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장애인의 주택보장 제도

중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주택 보장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다. 반면에 한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 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일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주거보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일본은 주택보장 제도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관한 법률은 없다.

(2) 장애인 표창, 장려제도

중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에 공헌한 장애인들이 표창과 장려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표창과 장려를 한다. 반면에 한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표창, 장려제도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다. 일본의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표창, 장려제도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다.

장애인 표창, 장려제도는 장애인의 사회 공헌을 장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봉사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은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국민의 의무 및 책임

중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국민들이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책임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 장

Table 7.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n China, South Korea and Japan.

항목	중국	한국	일본
총칙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사회참여 보장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보장
장애 군인 등에게 특별 우대	장애 군인이거나 공무로 장애를 얻은 사람에게 특별 우대.	없음 (다른 관련 법률)	없음 (다른 관련 법률)
장애인 표창, 장려제도	장애인 사업이나 사회에 공헌한 장애인이나 기관, 개인에 대한 표창 실시	없음	없음
장애인의 날	매년 5월 제3번째 일요일.	매년 4월 20일	매년 12월 3일-9일.
교육	국가는 장애인에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장애인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장애 아동 및 비장애 아동의 교류 및 소통 보장
장애인 등록증	없음 (다른 관련 법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증 발급	없음 (다른 관련 법률)
자동차 지원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	없음
주택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권장	주택 소유 보장,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 의무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관련 기관의 의무 및 책임-국민들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	국민의 책임(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	국민의 책임(모든 국민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
보고서 및 평가	없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	정부는 장애인 정책 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
경향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	장애인 복지의 상생 완성, 체계화	차별 없음
실행력	실행력 미흡	실행력 우수	실행력 우수
분야	건강의 회복, 교육, 취업, 문화생활, 사회보장, 무장애 환경, 법률 책임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장생활	의료 및 구호·교육 연금, 취업 컨설턴트 주택, 공공시설, 정보이용
보상과 처벌	(장애인사업+기관, 개인에게 표창, 장려제도)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징역+벌금	법 + 재정 조치 시행
차별	차별 없음	차별 없음	차별 없음
장애인 시설	보완 필요	시설 다양	시설 다양

6) 오현풍,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복지법 비교연구, 2014, pp.77-86.

애인복지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돕고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는 국민의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이 장애인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장애인들이 사회경제, 문화, 그리고 다른 분야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벌 제도

중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는 관련 기구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일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필요한 법적 조치와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이는 법률 보호의 기초 위에서만 장애인이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장애인에 대한 차량 지원

중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반면 한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표지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지원 내용이 없다. 자동차는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장애인의 차량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3.2 중국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중국에는 장애를 가진 인구수가 많다. 장애 상황에 따라 지체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시력 장애, 기타 장애 등으로 구분된다.⁷⁾

그중에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인구는 중국 전체 인구의 29.07%이다. 청각장애는 24.16%, 언어장애는 1.53%, 지적장애는 6.68%, 정신장애는 7.40%, 시각장애는 16.30%이다<Fig. 2>.⁸⁾ 이렇게 장애인가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완전한 정도는 아니고 시설 역시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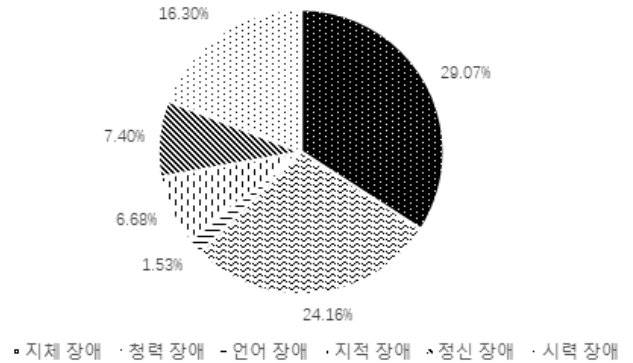


Fig. 2. China situation map for the disabled.

현재 중국의 장애인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다. 2006년에 실시한 제2차 중국 전국 장애인 조사에서 15세 이상 문맹인구는 3,591만 명, 약 43.2% 차지하고 있다.¹⁰⁾

중국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아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장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교육 기회를 주는 관련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에 한국 및 일본에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있다. 특히 한국 장애인복지법 38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도 학교에 갈 권리가 보장된다.

2006년 중국에서 제2차 전국 장애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료 분야에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있는 장애인 비율이 72.78%였으나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36.21%에 불과했다. 의료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료구조, 장애인 의료보험, 장애인 의료복지가 포함된다. 중국의 도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복지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안되는 편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복지의 미흡한 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반면에 한국 및 일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의료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pp.96-97.

8) 중국 장애인 총 인구 및 장애 분류에 따른 세부 인구와 장애 등급에 따른 인구수 조사, 중국장애인연합회, 2010, p1.

9) 周庆行, 张新瑾, 残疾人社会保障: 问题与对策, 理论探索期刊 2008年第5期, 2008, pp.96-97.

10) 제2차 중국 장애인 조사, 중국장애인연합회, 2006, p1

7) 韩君玲, 关于我国残疾人福利法律制度构建之思考, 河北法学期刊, 2012,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도 잘 되고 있다.

무장애 시설 분야에서 중국은 대중교통, 도로, 공공 공간, 건물 내부, 시각장애인이 시험을 보는 전용 점자시험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장애공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시행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¹¹⁾

중국의 시각장애인 전용도로 사정은 좋은 편은 아니다. 중국의 시각장애인 전용도로에는 자전거를 주차해 놓거나 나무를 심어놓는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다. 또한, 시각장애인 전용도로 설치가 복잡하다는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은 어려운 편이다. 반면에 한국 및 일본에서 시각장애인 전용도로는 활용과 보존이 잘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신호등이 있는 곳에 점자 안내문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근방에 표식도 표시해 두는 등 여러 면에서 장애인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다.

Table 8. China, Korea and Japan disabled barrier-free facilities.

국가	시각장애인 전용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중국		
한국		
일본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중국은 장애인 주차장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주차가 쉽지 않은 편이다. 또한, 장애인의 주차 공간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설적인 원인도 존재하나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한국 및 일본의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측면이나 홍보 등을 통하여 잘 정비되어 있다. 이로써 장애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걱정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2) 개선방향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3가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이다. 중국은 1994년 장애인 교육조례와 중국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중국 장애인 교육사업의 발전을 추진해 장애인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에 비해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가정의 자녀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장애인의 자녀 관련 비용을 감면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원은 많은 장애인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장애인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스스로가 선택하거나 맞춤형으로 적용되는 커리큘럼을 개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다. 국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 과정별로 교육 과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시각 장애인의 경우 점자 교과서를 준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반면에 한국의 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이 잘 되어 있고 시행도 잘 지켜지고 있어 대비가 된다.

둘째, 의료복지 분야이다. 중국,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의료시설과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¹²⁾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지원 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관련 의료 정책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에 우선되어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장애인의 의료복지 분야는 장애인 병원 검진 비용, 약 지급의 비용 감면 등의 정책이 있다. 특히 어려운 장애인 가정은 의료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정책도 고려될 수 있다. 농촌에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의료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을 예방하여 사람들의 재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회에 복귀하는 장애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 환원으로 이어진다.

셋째, 무장애 시설 분야이다. 중국에는 무장애 시설이 있지만 많은 공공 공간에서 장애인 시설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 대중교통의 장애인 전용좌석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 전용도로 및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항은 시설의 확충과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운영하는 법률이나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시설의 확충 없이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런 내용뿐 아니라 주택 보장, 자동차 구매 보장, 국민책임 등에서 미래에도 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중국 장애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장애인복지법의 개선이 필요하다.¹³⁾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교본 삼아 중국의 제도를 정비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인구 대국의 경우 정책의 작은 변화도 장애인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정비는 필요하다.

12) 钟志远, 我国农村残疾人社会保障法律问题研究, 中国西南大学 民商法学位论文, 2011, pp.9-10.

13) 罗财喜, 从古代残疾人法律制度审视当今残疾人保障法的完善, 吉首大学学报(社会科学版) 期刊第26卷第4期, 2005, pp.124-125.

11) 张伟芳, 史坤博, 田新社, 杨永春, 城市无障碍设施建设的满意度研究——以兰州市为例, 世界地理研究期刊, 2017, pp.57-58.

4. 결론

장애는 당사자에게는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현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장애는 소수의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장애인 사회 보장 법률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족하다.¹⁴⁾ 특히 중국 장애인 복지법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주요 3국인 한국, 일본, 중국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좋은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언급하였다. 결론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중국, 일본에는 다양한 장애인 관련 법률이 있으며 그중 장애인복지법이 가장 주요한 법률이다. 3국중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내용이 가장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의 장애인복지법은 강제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장애인복지법은 내용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법률이나 실행하려는 시민의식 수준이 아쉬움이 있었다.

(2) 한국, 중국, 일본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건강 회복, 교육, 취업, 문화생활, 사회보장, 무장애 환경, 법률 책임 등의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3국은 각 방면에서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통점이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3) 중국은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아직 많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주요 3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면서 개선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3국은 서로 협조하고 경쟁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책을 펼친다면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법률뿐만 아니라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로 한정하였고 시설 등 다른 분야는 분석되지 못하였으며 아시아의 3개 나라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고 생각되어 추후 시설, 제도 등의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오현풍,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복지법 비교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2. 제2차 중국 장애인 조사, 중국장애인연합회, 2006.
3. 중국 장애인 총 인구 및 장애 분류에 따른 세부 인구와 장애 등급에 따른 인구수 조사, 중국장애인연합회, 2010.
4. World Health Survey, 세계보건기구(WHO), 2010.

14) 沈雁群, 我国残疾人法律援助制度现状及其完善, 中国南开大学法律学学位论文, 2007, pp.17-18.

5. 罗财喜, 从古代残疾人法律制度审视当今残疾人保障法的完善, 吉首大学学报(社会科学版) 期刊第26卷第4期, 2005.
6. 沈雁群, 我国残疾人法律援助制度现状及其完善, 中国南开大学法律学学位论文, 2007.
7. 周庆行, 张新瑾, 残疾人社会保障: 问题与对策, 理论探索期刊 2008年第5期, 2008.
8. 韩君玲, 日本残疾人福利法的特征及启示, 学术交流2010年 第11期期刊, 2010.
9. 钟志远, 我国农村残疾人社会保障法律问题研究, 中国西南大学 民商法学学位论文, 2011.
10. 韩君玲, 关于我国残疾人福利法律制度构建之思考, 河北法学期刊, 2012.
11. 金炳彻, 张金峰, 韩国残疾人福利的历史`现状与未来展望, 人口与发展 2013年第19卷第2期期刊, 2013.
12. 朱思慧, 曹晋儒, 姚宏勃, 日本残疾人福利制度特点及对中国之借鉴, 改革开放期刊, 2016.
13. 张伟芳, 史坤博, 田新壮, 杨永春, 城市无障碍设施建设的满意度研究——以兰州市为例, 世界地理研究期刊, 2017.

접 수 일 자 : 2020. 10.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0. 11. 18

게 제 확 정 일 자 : 2020. 11. 21